

서비스가격

- **서비스 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유형 구분
- (1) 가 유형 : 본인부담금 0%
 (2) 나 유형 : 본인부담금 10%
 (3) 다 유형 : 본인부담금 30%
 (4) 라 유형 : 본인부담금 50%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단위: 원)

구분	소득 판정결과				
	가유형	나유형	다유형	라유형	
1 회 당	정부 지원금	80,000	72,000	56,000	40,000
	본인 부담금	-	8,000	24,000	40,000
	합계	80,000			
총 8 회	정부 지원금	640,000	576,000	448,000	320,000
	본인 부담금	-	64,000	192,000	320,000
	합계	640,000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단위: 원)

구분	소득 판정결과				
	가유형	나유형	다유형	라유형	
1 회 당	정부 지원금	70,000	63,000	49,000	35,000
	본인 부담금	-	7,000	21,000	35,000
	합계	70,000			
총 8 회	정부 지원금	560,000	504,000	392,000	280,000
	본인 부담금	-	56,000	168,000	280,000
	합계	560,000			

이용절차

-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상 거주지 기준으로 서비스 신청
 - 바우처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지역에 관계없이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
- ※ 지역별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https://www.socialservice.or.kr>)에서 검색 가능

비용결제

- 당일 서비스를 제공받은 직후 국민행복카드(바우처카드) 또는 전용 어플을 이용하여 생체인증(26년도 도입 예정)으로 결제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으로 직접 납부(계좌입금, 카드, 현금납부)

유의사항

- 서비스 신청은 당해연도 **1회만** 가능합니다.
- 신청한 서비스 유형과 동일한 유형의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 (예) 1급 서비스 유형 신청자는 2급 유형의 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 서비스 유형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바우처 결제 전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신청**하여야 합니다.
-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합니다.
-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 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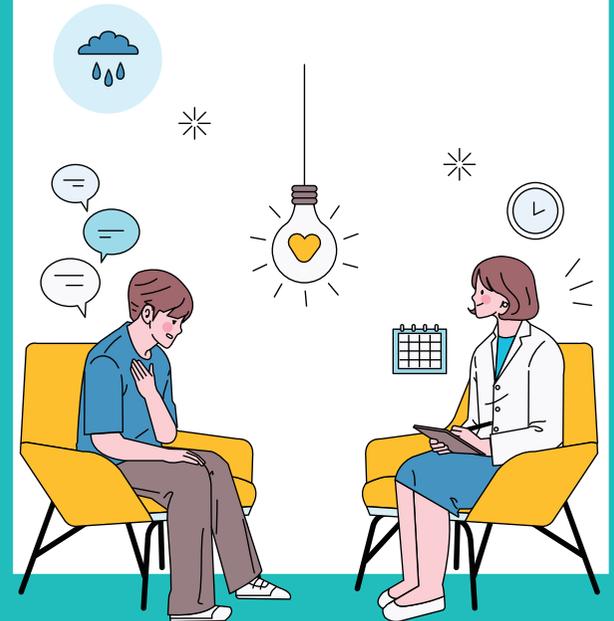
129

www.129.go.kr



2026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전문 심리상담을 받으세요.



이제, 마음건강을 돌보아야 할 때!

사업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봄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 대화가 아직 원활하지 않은 저연령 등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

신청기간

26.1.1. ~ 26.12.31.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1 신청 자격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 2 신청 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
- 3 구비 서류 : 대상자별 증빙서류



지원대상

대상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에서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대상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대상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대상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대상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대상 6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유가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확인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결정서 *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확인

서비스유형

대상자는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1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2급 유형
	-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